

# 韓國地圖學會定款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(이하 “학회” 라 한다)라 하며, 영문으로는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으로 표기한다.

**제2조(사무소)**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둔다.

**제3조(목적)** 학회는 지도학, 측지학, 지리학, 지리정보학 등 지도 관련 학문에 관한 연구와 지도제작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,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4조(사업)**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지도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의 장려와 지원
2. 지도제작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관련학회와의 교류
3.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행하는 지도제작사업에 대한 기술 협조 및 공동연구 수행
4. 국제지도학회(ICA)의 총회, 학술발표회 및 전시회 등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
5. 국제지도학회 회원국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국제친선 도모
6. 학회지와 지도학 관련 도서 및 연구성과물 등의 간행
7.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·의무

**제5조(회원)** 학회의 회원은 지도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, 지도학의 공동 연구활동과 학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정회원 : 대학에서 지도학, 측지학, 지리학 및 지도와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험이 5년 이상된 자로서 이사회가 입회를 승인한 자
2. 준회원 : 대학에서 지도학, 측지학, 지리학 및 지도와 관련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자로서 이사회가 입회를 승인한 자
3. 명예회원 :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학

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.

4. 특별회원 : 학회의 목적달성에 적극 협조하거나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정한다.

**제6조(회비)**

- ① 회원은 회비(특별회비를 제외한다)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명예회원의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 받는다.
- ②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나누며, 그 금액과 납부시기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**제7조(투표권)**

-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준회원·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정한 조건에 한해 투표권을 인정할 수 있다.
- ② 3회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회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**제8조(탈퇴)**

- ①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사무국장은 이를 지체 없이 회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사퇴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회원의 자격은 상실된다.

**제9조(제명)** 학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
**제10조(자격정지)**

- ① 연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연회비 납부마감일 익일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
- ②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1년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.

**제11조(자격상실)**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- ① 회원의 사망
- ② 회원의 탈퇴

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명

무 업무와 각종 회의 개최시 연락업무 등을 담당한다.

④ 사무국장은 국립지리원 지도과의 담당사무관이 겸직하며,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3장 임원 및 사무국

**제12조(임원)** 학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3인(총무부회장·재무부회장·학술부회장 각 1인)
3. 이사 20인 이내(회장·부회장을 포함한다)
4. 감사 1인

**제13조(임원의 선임)**

- ① 회장·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- ②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**제14조(임원의 임기)**
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 인 임원은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의 임기는 인준을 받은 날부터 개시되며, 차기 후임자가 선임된 날에 종료된다.
- ③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을 하고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 이때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15조(임원의 직무)**

-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,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총무부회장, 재무부회장, 학술부회장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총무부회장은 학회의 사무국을 관장하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- ④ 재무부회장은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업무를 관장하며, 자산을 관리한다.
- ⑤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연구활동, 학술발표회, 학회지 발간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.
- 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회장·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임원의 신분)** 학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, 겸직이 허용된다.

**제17조(사무국)**

- ① 학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며, 사무국은 국립지리원에 둔다.
-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일반서

### 제4장 총회,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

**제18조(회의의 종류)** 학회의 회의는 총회,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.

**제19조(총회)**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**제20조(총회의 소집)**

-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,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·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학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,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, 4/4분기에 개최한다.
-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1.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한 때
2. 재적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청구한 때
3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- ⑤ 제4항제2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,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- ⑥ 의장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 등을 총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**제21조(총회의 성립과 의결)**

-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③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총회 개최전에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.

**제22조(총회의 의결사항)**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임원의 인준
3.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
4. 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23조(이사회)**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**제24조(이사의 구성)**

-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,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5조(이사의 소집)**

-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,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부회장 및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, 4/4분기에 개최한다.
  -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1. 이사(부회장을 포함한다) 3인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- ④ 제3항 제1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,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**제26조 (이사회 의결)**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27조 (이사회 의결사항)**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출판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
3. 회원의 자격심사, 제명, 징계 및 투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
4.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6.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
7. 임원(이사를 제외한다)의 선출에 관한 사항
8.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9.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10.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11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

**제28조 (분과위원회의 설치)**

- ①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분과위원회의 명칭,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29조 (의사록)**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고, 의장 및 출석 이사의 날인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5 장 회 계**

**제30조 (경비)** 학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항목에서 발생하는 수입으

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의 회비
2. 찬조금 또는 보조금
3.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
4.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
5. 기타 수입

**제31조 (회계연도)**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32조 (예산 및 결산)**

- ①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, 이사회 의결과 감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6 장 보 칙**

**제33조 (정관의 변경)**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적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**제34조 (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)**

- ① 학회의 해산은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②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시킨다.

**부 칙**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당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경과조치)** 발기인은 본회의 설립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, 설립당기 원료사까지 발기인회에서 행한 행위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 (특별회원의 승인)** 본 학회에 국립지리원은 특별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한다.